

제30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(2022. 1. 6.)에서 의결된
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월 6일

고흥군의회 의장 송 영



규칙 제2022-42호

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

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제6조”를 “제7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고흥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 수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 다) <u>제6조</u> 규정에 의하여 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7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